⦁주주총회, 사원총회의 결산보고서 승인 (상법절차에 의함) 결 산 확 정 세 무 조 정 ⦁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 \*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 및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은 4월 이내 과 세 표 준 신 고 세 액 납 부 ⦁재무상태표 ⦁포괄손익계산서 ⦁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(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) ⦁세무조정계산서 ⦁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첨부 누락, 오류사항 수정 ⦁수정신고：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수 정 신 고 ⦁경정청구：신고기한 경과 후 5년내